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정 보 통 신 망 이 용 촉 진 및 정 보 보 호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358호, 2020. 6. 9., 일부개정) 됨에 따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정보보호인증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범위(안 제36조의2)

정보보호 규율대상이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 범위를 융합분야의 대표적인 산업분야로 규정

나. 침해사고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안 제54조의3, 안 제60조의2)

1) 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보안 취약점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정보보호 조치를 위한 전문기관을 중앙행정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함

다. 정보보호인증의 운영(안 제60조의3부터 안 제60조의9까지)

1)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운영하기 위한 인

증의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3년을 유효기간으로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을 받은 이후에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어 인증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하고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인증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2) 인증시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기준을 규정하고 휴·폐업시 신고, 양수·합병으로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위를 승계할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3부터 제36조의8까지를 각각 제36조의4부터 제36조의9까지로 하고, 제36조의2를 제36조의3으로 하며,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범위)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란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기·설비·장비 중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큰 기기·설비·장비 또는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초래되는 위험이 중대한 기기·설비·장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속하는 기기·설비·장비를 말한다.

1. 가전 : 멀티미디어 제품, 주방가전 제품, 생활가전 제품 등으로 스마트홈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기기·설비·장비
2. 교통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구성하거나 자동차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에 사용되는 기기·설비·장비 및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드론 및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

3. 금융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

4. 스마트도시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에 사용되는 기기·설비·장비

5. 의료 :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통신기능을 보유한 기기·설비·장비

6. 제조·생산 : 제품의 제조·생산 또는 용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어, 점검, 측정, 탐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기기·설비·장비

7. 주택 :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8. 통신 :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방송통신기자재 중 무선 또는 유선으로 통신하는 방송통신기자재

9. 그 밖에 침해사고 발생시 이용자의 생명·신체·재산 및 사생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기·설비·장비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기·설비·장비

제36조의2 앞에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을 삭제한다.

제36조의4 앞에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을 삽입한다.

제5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3(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① 정부는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보안 취

약점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절차 및 방법은 별표1과 같다

③ 법 제47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정보보호 관련 전문기관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7조의4제4항”을 “법 제47조의4제5항”으로 한다.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관련 전문기관) 법 제48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인터넷진흥원과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 관련 침해사고의 대응 관련 전문기관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60조의3(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의 절차 등) ① 법 제48조의6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이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와 함께 법 제48조의6제4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시험대행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용자 취급설명서
3. 인증시험용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4. 그 밖에 인증시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부령으로 정한 것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인증시험대행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 시험에 투입되는 심사원의 수, 인증심사에 필요한 일수, 심사업무에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수수료 산정을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은 법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인증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 정보보호인증 신청서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시험대상기기의 특성에 따라 인증시험을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설치된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시험 결과가 인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 관련 시험
· 검사 · 인증의 대상이 되는 기기 · 설비 · 장비를 정보통신망연결기
기등 정보보호인증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0조의4(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의 변경 · 재인증 등) ①
제60조의3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정보통신망연결기
기등의 주요한 설계 · 기능을 변경하여 인증기준에 미달할 우려가 있
는 경우에는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해당 기기
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정보통신망연결
기기등의 성질 · 형상의 동일성 인정되는 경우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
간을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의 연
장을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에게 재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0조의5(정보보호인증의 사후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
보보호인증을 받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
어 법 제48조의7제3항제2호에 따라 정하여 고시한 인증기준에 미달하
게된 경우에 해당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
유없이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지 않아 이용자의 생명 · 신체 ·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법 제48조의6제3항제2호에 따라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보안 취약점이 보완되기까지 인증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③ 법 제48조의6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을 취소하거나 제2항에 따라 효력을 정지한 경우에는 인터넷진흥원, 인증시험대행기관, 해당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사실과 사유 등 관련 사항을 자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한다.

제60조의6(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① 법 제48조의6제4항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법인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인증시험업무를 담당하는 기술 능력이 있는 인력(상근 2명 포함)과 전담 조직을 갖출 것
2. 인증시험업무를 수행할 설비, 시험공간 등 시험환경을 갖출 것
3. 인증시험 및 인증사후관리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운영 요건·능력을 갖출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3년의 범위에서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한 경우 지정사실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③ 인증시험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법

제48조의6제4항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을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재지정, 인터넷진흥원의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7(인증시험대행기관의 사후관리등) ① 인증시험대행기관은 전년도 인증시험실적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시험대행기관은 그 업무를 변경하거나 휴업·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인증시험대행기관이 아닌 자가 인증시험대행기관을 양수 또는 합병 등을 통하여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6제4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또는 같은 조 제5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시험대행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6제5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인증시험실적보고서, 인증시험대행기관의 휴업·폐업 신고, 양수·합병 승인 등

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8(정보보호인증에 관한 업무 등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6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부터의 정보보호 인증신청서와 결과보고서 접수, 정보보호인증서 발급, 정보보호인증의 변경·재인증 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업무
2. 법 제48조의6제3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사후관리 등 정보보호인증 취소에 관한 업무

별표 6부터 별표 9까지를 각각 별표 7부터 별표 9까지 및 별표 10으로 하고, 별표 5를 별표 6으로 하며,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중전의 별표 9)제1호라목 본문 중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목에 1)부터 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3)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4)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3부터 제60조의8까지의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신설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증시험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5]

보안 취약점 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 절차 및 방법(제54조의3제1항 관련)

1. 지급 기준

가. 지급대상

국내·외 거주하는 한국인

나. 평가 대상

침해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공개되지 않은 신규 보안 취약점

다. 포상금액

포상금은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정한다

2. 포상금 평가 절차

가. 신규 보안 취약점 확인 : 취약점 기본 정보 및 신규 보안 취약점 여부를 판단한다.

※ 신고내용만으로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보완 요청하여 해당 내용에 대하여 파악하며, 신규 보안 취약점이 아닌 경우는 신고자에게 알리고 해당 취약점 평가를 종료한다.

나. 1차 평가 : 신규 보안 취약점으로 확인된 취약점에 대해서는 법률 제47조의4 ②항에서 위탁된 기관에서 취약점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 방법에 따라 1차 평가를 실시한다.

다. 2차 평가 : 1차 평가가 완료된 취약점을 대상으로 포상금을 결정한다

3. 포상금 평가 방법

취약점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는 범위, 피해의 심각한 정도, 취약점을 악용하기 위한 난이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포상금 지급 취소 및 반환

가. 취약점 외부 공개 가능일(제조사나 보안 패치 한 날로부터 120일) 이전에 취약점을 공개한 경우

나. 기업 내부 정보 활용,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취약점 정보를 획득한 경우

다. 타 기관 또는 기업에 신고하여 이미 포상금을 수령한 경우

라.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마. 그 밖에 평가위원회를 통해 포상금 취소가 결정된 경우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6조의2(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범위)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기·설비·장비 중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큰 기기·설비·장비 또는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초래되는 위험이 중대한 기기·설비·장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속하는 기기·설비·장비를 말한다.</u> <u>1. 가전 : 멀티미디어 제품, 주방가전 제품, 생활가전 제품 등으로 스마트홈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기기·설비·장비</u> <u>2. 교통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구성하거나 자동차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에 사</u>

용되는 기기·설비·장비 및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드론 및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

3. 금융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

4. 스마트도시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에 사용되는 기기·설비·장비

5. 의료 :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통신기능을 보유한 기기·설비·장비

6. 제조·생산 : 제품의 제조·생산 또는 용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어, 점검, 측정, 탐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기기·설비·장비

7. 주택 :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8. 통신 : 전파법 제58조의2제1

<u>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u> <u>등</u> <u>제36조의2</u> (생략) <u><신설></u> <u>제36조의3 ~ 제36조의8</u> (생략) <u><신설></u>	<u>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방송통신기자재 중 무선 또는 유선으로 통신하는 방송통신기자재</u> 9. 그 밖에 <u>침해사고 발생시 이용자의 생명·신체·재산 및 사생활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기기·설비·장비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기·설비·장비</u> <u><삭제></u> <u>제36조의3</u> (현행 제36조의2와 같음) <u>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u> <u>등</u> <u>제36조의4 ~ 제36조의9</u> (현행 제36조의3부터 제36조의8까지와 같음) <u>제54조의3(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u> ① 정부는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u>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보안 취약점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u>
--	---

제55조(이용자 보호조치의 요청에 관한 약관사항) 법 제47조의4제4항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요청에 관하여 이용약관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절차 및 방법은 별표1과 같다

③ 법 제47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정보보호 관련 전문기관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5조(이용자 보호조치의 요청에 관한 약관사항) 법 제47조의4제5항-----

-----.

1. ~ 4. (현행과 같음)

제60조의2(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관련 전문기관) 법 제48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인터넷진흥원과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 관련 침해사고의 대응 관련 전문기관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신 설>

제60조의3(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의 절차 등) ① 법 제48조
의6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인증
(이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이라 한다)을 받
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연결기
기등 정보보호인증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를 다음 각 호와 함께 법 제48
조의6제4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
시험대행기관(이하 “인증시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
여야 한다.

1. 인증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
명하는 서류
2. 사용자 취급설명서
3. 인증시험용 정보통신망연결
기기등
4. 그 밖에 인증시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부령으로 정한 것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인증시험대행기관에 수수
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 시험에 투입되는 심사원의 수, 인증심사에 필요한 일수, 심사 업무에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수수료 산정을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은 법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인증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 보고서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 신청서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시험대상기기의 특성에 따라 인증시험을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설치된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시험 결과가 인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정

<신 설>

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 관
련 시험·검사·인증의 대상이
되는 기기·설비·장비를 정보
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
증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0조의4(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의 변경·재인증
등) ① 제60조의3에 따라 정보
보호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정
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주요한
설계·기능을 변경하여 인증기
준에 미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해당 기기
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정보통신
망연결기기등의 성질·형상의
동일성 인정되는 경우 정보보호
인증의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하
여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신 설>

있으며,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
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에게 재인증을 신청하
여야 한다.

제60조의5(정보보호인증의 사후
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정보
통신망연결기기등에서 보안 취
약점이 발견되어 법 제48조의7
제3항제2호에 따라 정하여 고시
한 인증기준에 미달하게된 경우
에 해당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특
별한 사유없이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지 않아 이용자의 생명·
신체·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법 제48조
의6제3항제2호에 따라 인증기
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해
당 보안 취약점이 보완되기까지
인증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③ 법 제48조의6제3항에 따라

<신 설>

정보보호인증을 취소하거나 제2항에 따라 효력을 정지한 경우에는 인터넷진흥원, 인증시험대행기관, 해당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사실과 사유 등 관련 사항을 자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한다.

제60조의6(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① 법 제48조의6제4항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법인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인증시험업무를 담당하는 기술 능력이 있는 인력(상근 2명 포함)과 전담 조직을 갖출 것
2. 인증시험업무를 수행할 설비, 시험공간 등 시험환경을 갖출 것
3. 인증시험 및 인증사후관리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운영 요건·능력을 갖출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제1항의 기준을 충족

<신 설>

하는지를 심사하여 3년의 범위
에서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
정할 수 있으며, 지정한 경우 지
정사실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
지에 공고한다

③ 인증시험대행기관은 제2항
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
월 전부터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
하여 법 제48조의6제4항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을 인증시험대행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
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인증시
험대행기관 지정·재지정, 인터
넷진흥원의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
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
다.

제60조의7(인증시험대행기관의
사후관리등) ① 인증시험대행기
관은 전년도 인증시험실적 보고
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시험대행기관은 그 업무를 변경하거나 휴업·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인증시험대행기관이 아닌 자가 인증시험대행기관을 양수 또는 합병 등을 통하여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6제4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또는 같은 조 제5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시험대행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6제5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보와

<신 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인증시험실적보고서, 인증시험대행기관의 휴업·폐업 신고, 양수·합병 승인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8(정보보호인증에 관한 업무 등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6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부터의 정보보호인증신청서와 결과보고서 접수, 정보보호인증서 발급, 정보보호인증의 변경·재인증 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업무

2. 법 제48조의6제3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사후관리 등 정보보호인증 취소에 관한 업무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	
연 락 처	(044) 202 - 6457